

## 제9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맛있는 단편영화 제작지원 2023 지원규정

### 제작지원 신청 관련 규정

-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내용의 교체나 보완이 불가하다.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동일 신청자가 2 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 작품 전체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.  
(1인 또는 1팀당 1개 작품 신청 가능)
-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 및 선정작에서 제외된다.
- 타인 명의로 지원 신청하거나, 심사위원회가 표절 작품 또는 표절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.
- 타 단체 혹은 기금의 지원이 확정된 작품은 본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과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, 본 영화제와 협의 하에 지원이 가능하다.

### 제작지원 작품 관련 규정

- '맛있는 단편영화 제작지원' 프로그램은 서울국제음식영화제와 서울경제진흥원(SBA)의 지원으로 운영된다.
- 지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 대상자(연출자 또는 제작사)에 귀속된다.
- 지원약정은 지원 작품 선정 결과 발표 후 2 개월 이내 체결하며, 지원금은 약정 체결 후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지급된다.
- 지원금 지급, 정산, 결과 보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제작지원 규정에 따른다.
- 후반작업 현물지원은 서울경제진흥원(SBA)과의 협약 하에 제공되며, 세부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과 지원 대상자,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조율하여 진행한다.
- 지원 작품은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.
- 제작지원금과 현물지원을 포함, 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내역을 초과하는 제작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.
- 지원 작품은 2024년 7월 31일(일)까지 제작이 완료된 완성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.
- 지원 작품은 2024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10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있다.
- 지원 작품의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상영 시 '관객과의 대화' 등 지원 대상자의 공식 행사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.

17. 제 10 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이전 타 영화제에서의 상영에 대해서는 서울국제음식영화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18.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제 10 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기간 외 상영회 및 기타 사업을 위한 추가 상영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다.
19. 상기 지원규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, 지원이 중단 또는 철회될 수 있다.